

##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2. 2. .  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### □ 개정이유

-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 내 징수를 제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품권 추첨제도의 도입과
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·돼지의 도축세율을 인하함으로써, 추가로 유입되는 도축물량의 수수료 수입으로 도축업체의 시설투자 등 경영비용 보전
-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함

### □ 주요골자

1.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신설(안 제14조의 3)
  - 가. 대상세목(정기분) : 재산세, 자동차세, 종합토지세
  - 나. 추첨시기 : 납기 익월 중
  - 다. 대상자 : 납기 내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
2. 도축세 세율을 부칙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조정
  - 가. 조례 본문 내용(안 제36조)
    - 소 : 도살하는 소 가격의 1,000분의 10
    - 돼지 :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,000분의 10
  - 나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획득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소·돼지(안 부칙)
    - 소 : 도살하는 소 가격의 1,000분의 5
    - 돼지 :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,000분의 5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6항 중 “세정담당”을 “업무담당”으로 한다

제1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4조의 3(납세자 경품권 추첨) ①시장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납세자 경품권 추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.

1. 대상세목은 재산세(정기분), 자동차세(제1기분, 제2기분), 종합토지세(정기분)
2. 추첨시기는 제1호 세목의 납기 익월 중
3. 경품권 대상자는 제1호 세목의 납기 내 납부자 중 체납세액이 없는 자로 납세 고지서 과세번호를 지방세 경품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추첨
4. 당첨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
제26조 중 “법 제200조”를 “법 제201조”로 한다

제27조 중 “법 제201조”를 “법 제202조”로 한다

제31조를 삭제한다

제32조 중 “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”를 “확정신고”로 하고, “영 제166조”를 “영 제156조”로 한다

제35조 중 “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”를 “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”로 한다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②(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)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36조의 규정에 불

(제52회 - 4차 자치행정위원회)

구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인증 획득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소·돼지의 도축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

1. 소 : 도살하는 소 가격의 1,000분의 5
2. 돼지 :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,000분의 5

소관 실·과·소		세 무 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세 무 과 장 박 순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세담당 한 영 옥
	담 당 자 성명·전화	한 영 옥 (644-2188)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의2 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&lt;생략&gt;         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<u>세정담당</u>이 되고, 서기는 <u>업무담당</u>직원이 된다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26조 (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)  <u>법 제200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용도, 농업소득금액,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의2 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⑥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u>업무담당</u>-----          -----</p> <p>제14조의 3(납세자 경품권 추첨) ①시장은 <u>납기내 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시행할 수 있다.</u>          ②납세자 경품권 추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.          1. 대상세목은 <u>재산세(정기분), 자동차세(제1기분, 제2기분), 종합토지세(정기분)</u>          2. 추첨시기는 <u>제1호 세목의 납기 익월 중</u>          3. 경품권 대상자는 <u>제1호 세목의 납기내 납부자 중 체납세액이 없는 자로 납세고지서 과세 번호를 지방세 경품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추첨</u>          4. <u>당첨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</u></p> <p>제26조 (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)  <u>법 제201조</u>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p>

(제52회 - 4차 자치행정위원회)

현행	개정(안)
<p>제27조 (개간·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)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, 사실상 준공년월일, 영농개시일,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날 또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 (개간·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)법 제202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1조 (중간예납)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<u>년 2회 시세조례로 정하는 기간</u>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기분 :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. 제2기분 :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업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업소득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1. 제1기분 :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2. 제2기분 :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</p>	
<p>제32조 (수시부과)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<u>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</u>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</p>	<p>제32조 (수시부과) ----- -----<u>확정신고</u> ----- ----- -----<u>영 제156조</u> -----</p>
<p>제35조 (과세표준)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,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<sup>의</sup>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.</p>	<p>제35조 (과세표준)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.</u></p>